

2017.07.21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달라지는 관세행정 사항 중, 주요내용 및 발표자료를 요약·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2017.07.21

주요내용

2.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예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유예요건	변경 유예요건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다음 요건 충족시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u>50%</u> 이상 기업 · 수입규모별 <u>4~10%</u> 이상 일자리 창출 예정 기업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다음 요건 충족시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u>20%</u> 이상 기업 · 수입규모별 <u>2~4%</u> 이상 일자리 창출 예정 기업

3.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 경비 납부절차 개선

-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하여 임시개청·파출검사 수수료 발행주기를 월 1회 통합발행으로 변경하고 납부기한도 발행일로부터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행 : '17.7.19. 이후 발행 고지서부터 적용)

2017.07.21

주요내용

4.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

- 성실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하여 원상태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원상태수출시 수출신고서에 수입관련증빙(수입신고 필증 또는 분할증명서 번호)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했지만 성실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관련증빙 기재 생략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세행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성실 수출기업 요건 등 자세한 제도 적용방안은 17년 하반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 신속한 협정관세 적용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경우 증빙자료(납세신고정정신청)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 '17.10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2017. 7.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①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p.1
②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	p.2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방법 명확화	p.3
④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납부절차 개선	p.4
⑤ 소액채납자에 대한 월별납부요건 완화	p.5
⑥ 중국산 에이치 형강 덩팡방지관세 부과 제외 추가	p.6
⑦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 조정	p.7
⑧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p.8
⑨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	p.9
⑩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신규 지정 및 재지정	p.10
⑪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p.11
⑫ 종합보세구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	p.12
⑬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p.13
⑭ 한-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p.14
⑮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p.15
⑯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p.16
⑰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p.17
⑱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	p.18
⑲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Help-Desk) 상담서비스 개선	p.19
⑳ 한-호주, 한-UAE AEO MRA 체결	p.20

1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

(법인심사과 042-481-785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은 잠정가격신고 대상 아님</p>	<p><input type="checkbox"/> <u>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후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p>*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p>

- (기대효과) 다국적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
- (시행일) '17. 7. 1.(「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 및 제51조 개정)

2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

(법인심사과 042-481-798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u>50%</u> 이상 기업 ● 수입규모별 <u>4~10%</u>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 	<p>□ <u>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로 관세조사 유예 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u>20%</u> 이상 기업 ● 수입규모별 <u>2~4%</u>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

○ (기대효과)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문제 완화 및 경제 활력 제고

○ (시행일) '17년 7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후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

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방법 명확화

(법인심사과 042-481-785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방법 명확화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u>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u>

○ (기대효과) 민원인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방지

○ (시행일) '17. 7. 1.(「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3)

4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납부절차 개선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임시개청·파출검사 수수료 • (발행주기) <u>매일</u> • (납부기한) <u>발행일의 다음 날</u>	<input type="checkbox"/> 임시개청·파출검사 수수료 • (발행주기) <u>월 1회 통합발행</u> • (납부기한) <u>발행일로부터 15일</u>

○ (기대효과)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 제고

○ (시행일) '17. 7. 17.(「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17. 7. 19. 이후 발행될 고지서부터 적용)

5 소액체납자에 대한 월별납부요건 완화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 <u>체납액 규모 관계없이</u> 월별납부 배제	<input type="checkbox"/> <u>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완화</u> • <u>체납액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별납부 배제요건에서 제외</u>

○ (기대효과) 약 5천여 소액 체납업체의 월별납부 이용(연간 약 9,000 억원)시, 이자비용 40억원 절감

○ (시행일) '17. 6. 15.(「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6 중국산 에이치 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

(세원심사과 042-481-77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별표 1 제6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6.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나.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라.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p> </div>	<p>□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별표 1 제6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6.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 티엔중(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나.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라.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p> </div>

○ (기대효과) 중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수정을 약속한 업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대상업체로 등록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유도

○ (시행일) '17. 7. 19.(「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7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 조정

(통관기획과 042-481-781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34개</u> 품목 운영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33개</u> 품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외</u>)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u>36개</u> 품목 - (<u>추가</u>)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u>35개</u> 품목

○ (기대효과)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 (시행일) '17. 7. 19.(「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8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규>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통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을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 및 수리</u> ※ <u>일정 시간 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자동수리</u>

○ (기대효과)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인한 특송화물 처리 지연 해소

○ (시행일) '17. 7. 24.(시범 운영 : 특송센터 입주 4개 업체)

※ 확대 실시 예정('17년 10월 잠정)

'17. 7. 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9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

(통관기획과 042-481-780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원상태수출시 수입내역 증빙 • 원상태 수출시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등 증명 -수출신고서 항목④에 수입신고번호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 • 성실 수출기업에 원상태 수출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 증명 생략 -수출신고서 항목④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 등 수입관련 증빙 내역 기재 생략 가능

○ (기대효과) 성실 수출기업의 원상태수출시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시행일) '17년 하반기(「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10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통관기획과 042-481-78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염,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천일염(식용), 가리비, 돔,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u>보리</u>, <u>인삼제품</u>, <u>홍삼</u>, <u>팥</u>, <u>황기(식품용)</u>, <u>당귀(식품용)</u>, <u>지황(식품용)</u>, <u>천궁(식품용)</u>, <u>작약(식품용)</u>, <u>황금(식품용)</u>,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동꽂치, 김치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천일염(식용), 가리비, 돔,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팥,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동꽂치, 김치, <u>냉장갈치</u>, <u>냉동멸치</u>, <u>냉동기름치</u>, <u>냉동기름치</u>, <u>꽃가루</u> - (재지정) <u>냉동조기</u>, <u>냉동고등어</u>, <u>냉동갈치</u>, <u>미꾸라지</u> - (신규) <u>냉장갈치</u>, <u>냉동멸치</u>, <u>냉동기름치</u>, <u>꽃가루</u> - (삭제)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

○ (기대효과)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일) '17. 8.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냉동조기	2017.8.1 ~ 2018.7.31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신규지정	냉장갈치	2017.10.1 ~ 2019.1.31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11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수단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운송신고필증에 <u>수기기록</u> 및 상호 교환·보관 <p>*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9호, 제12호</p>	<p><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수단 신고 전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운송수단정보(차량번호)를 화물 반출 전까지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기대효과) 보세운송수단 신고를 전산화하여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

○ (시행일) '17. 8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2조 개정 및 별지서식 제9-2호 신설 예정)

12 종합보세구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행일) '17. 10월(「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13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통관기획과 042-481-789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요건확인 수작업심사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서류 심사 시 수출입요건을 수작업으로 확인	<input type="checkbox"/> 요건확인 전자심사제 도입 • 수출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자적으로 상호대사하여 수출입 요건 심사

- (기대효과) 신속·정확한 요건확인으로 신속통관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시행일) '17. 10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제9조 개정 예정)

14 한-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FTA집행기획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 • HS 2007 기준으로 C/O 5번란(HS코드) 및 6번란(Preference Criterion) 작성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 • HS 2012 기준으로 C/O 5번란(HS코드) 및 6번란(Preference Criterion) 작성

- (기대효과) HS 2012기준에 따른 C/O작성으로 수출자의 편의제고
- (시행일) '17. 7. 1.(「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 교환각서」 발효)

15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FTA집행기획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 <u>서면제출</u> * 납세신고정정신청(경정청구)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 <u>전자제출</u>

- (기대효과) 신속한 협정관세 적용으로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
- (시행일) '17. 10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16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 <u>최대 5천만원</u> -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법§32 ①) 또는 1천만원(법§32조 ②) ●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u>감경율을 20%로 규정</u> <p>* 자진신고, 중소기업(1회 감경으로 한정), 기타 경미한 과실 등</p>	<p>□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u>상향조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 <u>최대 1억원</u> -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u>1억원(법§32 ①), 5천만원(법§32 ②), 3천만원(법§32 ③), 1천만원(법§32 ④)*</u>으로 세분화 및 <u>상향조정</u> ●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u>감경율을 50%로 확대 및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u> <p>* 자진신고, 중소기업, 기타 경미한 과실 등</p>

○ (기대효과)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 (시행일) '17. 7. 18(「외국환거래법」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4 개정)

17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u>각각 과태료 부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50만원(또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u> <p>※ (예시)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씩 <u>6회</u>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u>6백만원(100만원X6)</u> 부과 ● 1천만원씩 <u>4회</u>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u>4백만원(100만원X4)</u> 부과 	<p>□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반금액의 2%(또는 4%)</u> - <u>다만,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총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 100만원(또는 200만원) 부과</u> <p>※ (예시)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씩 <u>6회</u>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금액의 4%인 <u>240만원(40만원X6)</u> 부과 ● 1천만원씩 <u>4회</u>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원 미만(4천만원)으로 <u>200만원</u> 부과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불복 절차, 체납처분 등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및 과태료 납부 이행을 제고
- 수개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던 불합리 개선

○ (시행일) '17. 7.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하목 개정)

18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

(국제협력팀 042-481-79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규>	<input type="checkbox"/> 해외 통관장벽 타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체계 구축(▲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 ▲통관애로 해소 지원, ▲제도 및 시스템 개선)</u> ● <u>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현지 기동팀 파견</u>

○ (기대효과)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적기 해소·통상 지원

* 해외 통관애로 현황 : 407건('14) → 444건('15) → 461건('16)

○ (시행일) '17. 9월 ~ 11월(잠정)

19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Help-Desk) 상담서비스 개선

(정보관리과 042-481-77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상담 서비스(Help-Des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전산 관련 문의를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응대 	<p>□ Help-Desk 상담창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콜백(Call-back) 서비스)</u> 먼저 걸려온 전화 응대로 인해 전화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 처리 • <u>(인터넷) UNI-PASS에</u> 즉문·즉답 가능한 게시판(Q&A) 신설

○ (기대효과)

-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 전화상담 연결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불만 해소

* 상담원 전화연결 대기시간 지연(평균 1분 20초)으로 응답포기율(월평균 8~10%) 지속 발생
(응답포기율 = 통화포기건수 / 총 통화시도건수)

-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Help-Desk) 상담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시행일) '17년 10월

20 한-호주, 한-UAE AEO MRA 체결

(심사정책과 042-481-786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4개국</u>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 <p><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6개국</u> - (좌 동) - <u>호주, UAE</u>

○ (기대효과) AEO기업 통관혜택* 로 호주, UAE 수출 확대 기대

* (MRA 혜택) 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

○ (시행일) '17. 7. 6. 체결